##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31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위성곤·문대림·김성회

이해식 • 박희승 • 서영교

이원택 • 주철현 • 김한규

허 영•박해철•박지혜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 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분원 설치·지정·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 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제1항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로한다.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한다.
- 1.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 2.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분원의 설치 등)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 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인격) <u>&lt;신 설&gt;</u>	제4조(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
	유센터를 설립한다.
	1.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2.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u>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u>	② 제1항의 국립국가폭력트라
(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	<u> 우마치유센터</u>
인으로 한다.	
제6조(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	제6조(분원의 설치 등) 치유센터
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	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
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u>있</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
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u>다.</u>	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 제17조(운영재원)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략)

2. 기부금

3. (생략)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 · 왜곡 · 날조한 자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 조금 및 기부금
- 3. (현행과 같음)

보조 하여야 한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 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 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